

##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회사법상 최저 액면가(4,000리엘) 제한에 대한 공모 및 상장기업의 예외 인정(상무부, 2013년 1월 31일)

캄보디아 상무부는 2013년 1월 31일 회사법 제143조, 제144조에 따른 주식 액면가액 결정에 관한 부령 제57호(Prakas No. 057 on Determination of Share Par Valu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3 and 144 of Law on Commercial Enterpri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캄보디아 증권거래법에 따라 주식을 공모하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법상 최저 액면가(1주당 4,000리엘)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상장기업은 주식의 공모가격을 낮춰 주식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의 공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사회복지부, 2013년 3월 21일)

캄보디아 사회복지부는 봉제공장 및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기존의 61달러에서 73달러로 인상하고 보건수당 5달러 및 훈센 총리의 권고에 따라 추가수당 2달러를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업분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80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위 새로운 최저임금은 2013년 5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